

# 2026.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

## 1. 근 거

- 「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」 제6조(결시자의 성적인정)
- 「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」 제21조(결시자 성적인정)

## 2. 신청 대상

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「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」 [별표5]의  
“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”에 해당하는 자 ※ 자세한 인정 기준은 [붙임] 참고

### <주의>

- 출석수업, 중간과제물, 출석수업대체과제물, 기말과제물은 결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-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합니다. (전부 결시 불가)
- 중간평가(출석수업, 출석대체시험·과제물, 중간과제물)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, 기말시험 결시 신청은 불가합니다.

## 3. 신청 기간

- (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) [2026. 6. 1.\(월\) 09:00 ~ 6. 5.\(금\) 18:00까지](#)
- (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) [2026. 6. 8.\(월\) 09:00 ~ 6. 22.\(금\) 18:00까지](#)

### <시험일정>

- 출석수업대체시험: 2026. 5. 30.(토) ~ 5. 31.(일)
- 기말시험: (1주차) 2026. 6. 4.(목) ~ 6. 7.(일) / (2주차) 6. 11.(목) ~ 6. 14.(일)

## 4.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

- (신청 방법) 학사정보시스템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
### <신청경로 및 신청 방법>

- (PC) 홈페이지 로그인 - 학사정보 - MyKNOU 학사정보 - 시험 -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
- (어플) MyKNOU 로그인 - (하단의 메뉴) - 시험 -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
- ⇒ 시험 구분(출석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) 선택 - 해당과목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  
- 신청사유 선택 - 개인정보 동의 - 증빙서류 제출

<주의> 시험 한 회차에 신청한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

예시: 시험 1회차의 신청 교과목이 A,B,C교과목인 경우, A,B,C 3과목 모두 결시 신청  
(B교과목 또는 C교과목 등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은 불가)

- (승인 처리)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

<참고>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“처리상태” 확인 가능

- (접수)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
- (서류보완요청)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,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
- (승인불허)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,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청을 반려한 경우

## 5 성적 인정

- **최고점 B+(89점) 적용**
- 성적 환산 방법
  - (대체시험 결시 승인자) 기말평가 성적을 69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
※ 형성평가(20점 만점)+기말평가취득점수×69/50(69점 만점)
  - (기말시험 결시 승인자) 기말평가 성적을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
※ 형성평가(20점 만점)+중간평가(30점 만점)+기말추가과제물평가(39점 만점)

붙임 2026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 1부.

## 2026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

※ 「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」의 [별표5]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의함

결시사유		제출 증빙서류	인정기간
사망	1) 배우자 2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사망진단서	본인의 시험일 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까지
	3) 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4) 자녀, 자녀의 배우자 5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		본인의 시험일 3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까지
출산 (유산)	본인의 출산(유산)	① 출생(예정)증명서 또는 진단서	본인의 시험일 4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까지 또는 본인의 시험일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
	배우자 출산(유산)	①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명서	본인의 시험일 10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까지
입원	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	① 입·퇴원증명서	본인의 시험일
응급환자 <sup>1</sup>	응급환자(본인)	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② 응급실 진료기록	본인의 시험일
각종 사고	재난 <sup>2</sup> 피해	① (공공기관 발행)사실확인서 또는 (보험회사 발행)사고확인서	본인의 시험일 5일 전부터 본인의 시험일까지
	교통 사고		본인의 시험일
감염병 <sup>3</sup>	1급	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※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	본인의 시험일
	2급	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	본인의 시험일
	3·4급	① 격리진단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	본인의 시험일
국외출장 <sup>*</sup>	1) 국가기관의 공무상 국외 출장 2)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 * 파견·연수를 포함함	① 국외출장(파견·연수) 공문 ② 출·입국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	본인의 시험일
비상근무 <sup>4</sup>	1) 공무원의 비상근무 2)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	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(소속 기관장 발행)	본인의 시험일
각종행사 및 동원·훈련	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<sup>5</sup> 의 공무상 각종 행사	① 행사 동원(근무) 계획 공문 ② 행사 동원(근무) 사실확인 증빙서류 (소속 기관장 발행)	본인의 시험일
	군인·경찰·소방의 동원·훈련	① 동원·훈련 계획 공문 ② 동원·훈련 사실확인 증빙서류 (소속 기관장 발행)	본인의 시험일
채용시험의 의무적·필수적 전후 과정으로서의 교육참여		① 교육대상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서	본인의 시험일
국가대표의 훈련, 국제대회 참가	1) 각 연령급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훈련	① 훈련소집 증빙서류	본인의 시험일
	2) 국가대항전 및 국제대회 참가	① 참가 관련 증빙서류 ② 출·입국사실확인서	

1. 응급환자 기준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]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따른다.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
3. 감염병 1~4급 기준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4. 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 제3장제3절 “비상근무” 규정에 따르며, 군인·소방·경찰, 공익사업장의 경우 기관의 비상근무 명령에 의한다.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

◎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◎ 인정사유별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취득한 성적은 취소하고 0점 처리 한다.

※ (인정기간 예시) 배우자 출산(10일) 및 본인 시험일이 6.14.인 경우 ⇨ 6.4.부터 6.14.까지 기간 중 사유 발생 시 결시 가능

##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

### 1. 응급증상

- 가. 신경학적 응급증상 : 급성의식장애, 급성신경학적 이상,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- 나. 심혈관계 응급증상 :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호흡곤란,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이상 및 쇼크
- 다. 중독 및 대사장애 : 심한 탈수, 약물·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, 급성대사장애(간부전·신부전·당뇨병 등)
- 라. 외과적 응급증상 :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(급성복막염·장폐색증·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), 광범위한 화상(외부신체 표면적의 18% 이상), 관통상, 개방성·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,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,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다발성 외상
- 마. 출혈 : 계속되는 각혈, 지혈이 안되는 출혈, 급성 위장관 출혈
- 바. 안과적 응급증상 :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손실
- 사. 알러지 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- 아.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경련성 장애
- 자. 정신과적 응급증상 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
### 2.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- 가. 신경학적 응급증상 : 의식장애, 현훈
- 나. 심혈관계 응급증상 : 호흡곤란, 과호흡
- 다. 외과적 응급증상 : 화상,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, 골절·외상 또는 탈골,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
- 라. 출혈 : 혈관손상
- 마.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, 38℃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·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)
- 바.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: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
- 사. 이물체에 의한 응급증상 : 귀·눈·코·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